

# 질의 서면 답변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위원	김완규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기획실장)	답변시한	10일(경과시 중간 통보)

## 《질문요지》

- 제89회 평창군의회(임사회) 제1차조례특위에서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 질의하신 내용은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 《답 변》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한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기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향토학사 입사생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 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
      2. 평창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3.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4.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 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보호자의 근거주 년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 위와 같이 기준으로 2001년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은 2001. 2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하였고, 그 중 남녀 각각 10명씩 선정하여 향토학사에 입사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